

2025년 강남구 미래산업 기반기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

강남구청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강남구 소재의 미래산업 분야의 저변확대 및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「2025년 강남구 미래산업 기반기업 지원사업」에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
2025년 08월 01일
강남구청장
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

1

강남구 미래 산업 기반 기업* 지원사업 개요

- 사업목적 :** 강남구 소재의 미래산업 분야 활성화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,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,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, 대·중견기업과의 막eting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 지원
 - * 미래 산업 기반 기업: 사물인터넷(IoT), ICT융복합, 빅데이터, 가상(VR).증강(AR)현실, 인공지능, 3D프린트, 항공우주·드론·로봇산업 등의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(강남구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참조)
- 주최 · 주관 :** 강남구청,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
- 모집대상 :** 강남구 소재 미래 산업 분야의 창업 7년 이내 기업(신산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내)
 - * 신산업 창업 분야 [별첨3]에서 확인
- 선정규모 :** 창업기업 10개사
- 지원내용 :** 맞춤형 컨설팅 등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의 성장 지원

2 사업 세부내용

- 지원기간 :** 협약시작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
- 지원내용 :** 기업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, 대·중견기업과의 맛업 기회, 투자자 대상 데모데이 및 우수기업 투자검토, 소정의 PoC 지원금
* 대·중견기업의 사업분야와 매칭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.
- 추진절차 :**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요건검토 및 도시문제 해결의 파급력, 평가기준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기업 선발.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



* 일정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관련 세부계획은 사업페이지를 통해 안내

□ 평가지표(안)

심사 항목	주요 내용
성장가능성 (3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보유 아이템 관련 소비자의 수요 및 니즈 반영 여부■ 시장진출 및 사업성■ 향후 성장 전략 및 문제점 개선 방안
실현가능성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기술 개발 및 구현가능성
아이템의 독창성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■ 신규 서비스일 경우, 아이디어의 창의성
팀구성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대표자 및 팀원들의 보유 역량 및 창업에 대한 의지■ 기술 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팀구성 및 역량
기술(서비스)의 파급력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기술(서비스)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 및 시장 파급 효과■ 기술(서비스)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력 및 파급효과

3

사업 신청

모집기간 : 2025. 8. 1.(금) ~ 2025. 8. 31.(일) 18시까지(기한엄수)

신청방법 : 담당자 메일 접수(gspark1@ccei.kr)

제출서류

No.	제출서류	비고
1	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별첨1 첨부
2	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별첨2 첨부
3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사업자에 한해 제출)	필수제출
4	창업기업 확인서(공고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내 경우만 인정) * 확인서 기 보유 및 공고기한 내 발급 완료된 경우, 신청시 첨부 ※ 발급처 : cert.k-startup.go.kr	필수제출
5	기업 소개자료	선택사항
6	기타 서류 (회사의 장점 및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. 매출/투자/고용 등의 증빙자료)	선택사항

신청자격 :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.

- 강남구 소재 기업(공고일 기준. 본사, 지사, 연구소 모두 가능)
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,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(또는 기업)(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인 자)

< 신청 자격 세부 조건 >

▶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(창업(설립)일 기준) : 2018. 8. 1. ~ 2025. 7. 31.

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* 개인·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(개인·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([참고 1]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)
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
※ 7년 이내 창업기업 증명을 위한 '창업기업 확인서' 발급 및 제출 필수

*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 신청할 것을 권장

□ 신청 제외 대상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([참고 2]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
④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⑤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⑥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
⑧ 기타 강남구청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⑨ 소재지가 강남구에 해당하지 않는 자(기업)

□ 사업문의

- 문의처 :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산업 기반기업 지원사업 담당자
- 전화번호 : (02)798-9317
- 이메일 : gspark1@ccei.kr

□ 유의사항

- 마감 시간 이후 접수불가에 따른 기한 엄수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
- 선정 전·후에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의 도용, 허위기재, 누락, 관련 규정 위배 등의 경우에는 선정배제·선정취소·상금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내용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비밀유지
-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됨
- 대표자 본인 이름으로 신청해야 함
 - 공동대표인 경우, 대표자 모두 신청 자격에 부합해야 함
- 온라인 발표는 불가하고, 대표자 발표가 원칙. 단, 부득이한 경우 팀원 발표는 가능하나, 추후 팀원 소속 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
- 신청 및 접수된 아이템에 대한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없으며,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

-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의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임금체불, 세금 체납, 산업재해,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